

『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8일

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보호조치, 퇴소조치,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, 그 밖에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정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
 - 조례의 제정목적(안 제1조)
 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
 - 위원 수, 위원장, 당연직 위원, 위촉직 위원의 자격(안 제3조)
 -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, 회의(안 제6조 ~ 제8조), 위촉 해제(안 제9조)

- 우선조치, 자료제출 요구, 간사, 수당 등
 - 우선조치 후 사후심의(안 제10조), 자료제출요구(안 제11조)
 - 간사, 수당, 운영세척 등(제12조 ~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붙임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의 보호 및 퇴소에 관한 사항, 후견인선임 등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(2011.8.4전부개정, 2012.8.5시행)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

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